

[사 건 명] 행심 2019 - 73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10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4.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10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1. 인정사실

- ① 청구인은 2019. 3. 초경 학교 화장실 대변실 안에서 피해학생으로부터 5만원을 받아갔다. 그리고 청구인은 그날 방과후 학교를 벗어나 PC방 부근에서 피해학생에게 4만원을 되돌려 주었다.
- ② 2019. 3. 11.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때 청구인은 2019. 2.경 피해학생에게 빌려준 1만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학생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오히려 몇 차례 돈을 빼앗긴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학생이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이를 빌미로 5만원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였다.
- ③ 2019. 3.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청구인과 피해학생 및 그 학부모의 진술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상반된다는 이유로 결정을 유보하였다가,

2019. 4. 1. 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정지 10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 ④ 피청구인은 2019. 4. 3. 청구인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결정한대로 조치를 하였다.

2. 학교폭력 해당 여부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주장이 너무 일치하지 않으므로 주장의 신빙성에 대하여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청구인이 사건 당일 화장실 대변실 안에서 피해학생으로부터 5만원을 가지고 간 사실은 다툼이 없다.
- ② 청구인은 화장실 세면대 부근에서 피해학생을 우연히 보고서 함께 대변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화장실 세면대 부근에서 요구하면 되고 청구인이 피해학생과 함께 굳이 대변실 안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 ③ 또한 청구인은 사건당일 피해학생 교실에 간 적이 있으나 다른 일 때문에 갔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청구인의 교실(9반)과 피해학생의 교실(6반)이 그리 멀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언제든지 피해학생의 교실로 가서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음에도, 화장실에서 우연히 보고서 대변실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④ 청구인은 이전에 피해학생에게 1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학생이 5만원짜리 지폐만 가지고 있어서 일단 5만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1만원을 빌려준 사람이 먼저 5만원을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다시 4만원을 되돌려 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리고 실제 돈을 반환할 의사였다면 5만원을 받은 다음 즉시 또는 빠른 시간 안에 되돌려 주었어야 함에도, 방

과후 학교 밖에서 4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 ⑤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친한 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학생에게 1만원을 빌려준 시간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마음대로 피해학생으로부터 5만원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3. 조치의 상당성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의사와 관계 없이 돈을 가지고 갔음에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피해학생과 화해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조치의 정도는 상당하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